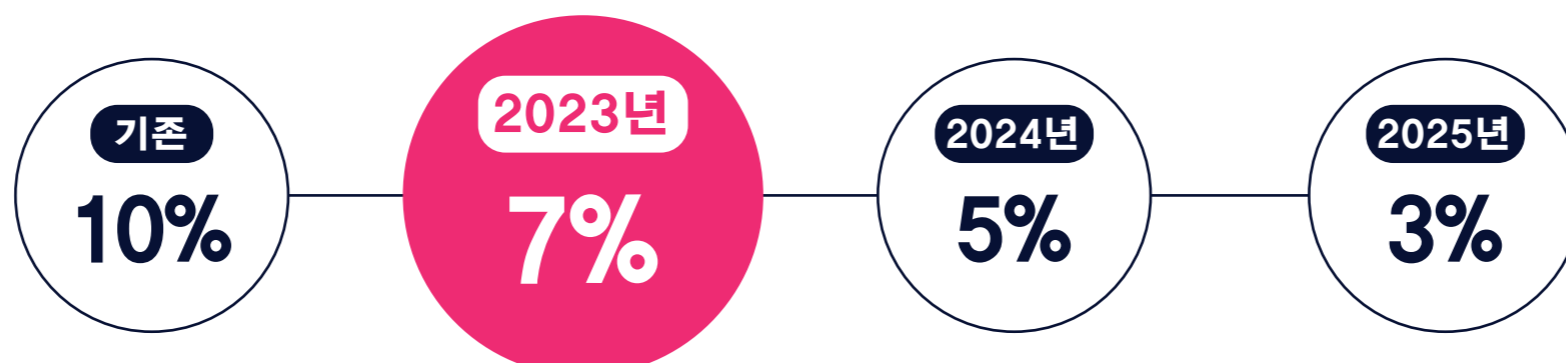


2023년 부터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공제율이 변경됩니다



변경내용



※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납공제율 변경 (제125조 제6항)
 ※ 연납공제율 :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

연납안내

· 납세의무자 : 지방자치단체에 등록(신고)된 자동차의 소유자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
 ※ 전년도(2022년) 연세액 납부자의 경우, 신고납부서가 발송됩니다 (우편, 전자고지)

· 신고납부기간 : 신고납부 가능 월(1·3·6·9월)의 16일부터 말일까지

해당 월	공제액
1월	11개월분(2~12월)의 7%
3월	9개월분(4~12월)의 7%
6월	6개월분(7~12월)의 7%
9월	3개월분(10~12월)의 7%

· 신청방법
 : 관할 구청 세무부서 방문·전화 신청
 : 인터넷(ETAX) 신청

문 의

관할 구청 세무부서(세무과·지방소득세과·부과과 등) 또는 다산콜재단(☎120)